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5일 03시 53분



목차

목차	2
과태료	3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3
일반적인 부과 절차	3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3
행정사항	3
건설기계 과태료	4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이륜차신고	과태료	취득 등록면허세
검사/의무보험	자동차등록현황	민원서식	자주하는 질문	오시는 길

- 자동차과태료
- **건설기계과태료**
- 이륜자동차과태료
- 압류등록/해제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1 행정청이 부과하고
- 2 위반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
- 3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4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법원에서 과태료 결정 부과처분)
- 5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차량, 채권,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위신고 ② 신고기간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최고 20만원 ▪ 2만원 ▪ 1만원 가산 	법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실하고 30일 초과시 >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20만원 	법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40만원 ▪ 3만원 ▪ 1만원 	법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40만원 ▪ 2만원 ▪ 1만원 가산 	법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사면허를 허위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위로 신고한 때 ② 변경신고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초과시 매6일 초과시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 최고10만원 ▪ 1만원 ▪ 1만원 가산 	법제30조

Yeosu Web Contents

